

화성 봉담자이 라젠스 무순위(사후) 4차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33-5820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022.08.25.)로부터 3년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 기간 도과)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2.08.05.(금)	26.03.16.(월)	26.03.23.(월)	26.03.26.(목)	26.03.27.(금)~26.03.28.(토)	26.04.02.(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X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3.16.(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065**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8.05.(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379**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위치하여 도시개발사업 준공일자와 아파트 준공일자가 다를 수 있어 아파트 준공과 토지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 완료된 현장으로 견본주택이 현재 운영되지 않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본인에 한해 아파트 방문하여 세대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을 원하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사전에 예약 신청받아 세대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이 완료된 상태로 계약해지 사유로 재공급되는 세대입니다. 호실마다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가전, 가구, 마감재 고급화 등) 시공 여부가 다르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 해당 호실에 시공된 옵션 계약(에어컨 미설치 포함)을 변경이나 부분 취소 없이 100%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추가 선택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순위내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계약해지분 세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3.23.(월)	26.03.26.(목)	26.03.27.(금)~26.03.28.(토)	26.04.02.(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주소 : 경기도 화성특례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서북안길 70, 단지내상가 108호)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화성특례시 효행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2.08.05.)로부터 3년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 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특례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서북안길 70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층 7개동 총 862세대 중 잔여 3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06월 예정(최초 입주 개시는 2025년 05월이며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2026년 06월 30일까지 잔금 완납 후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065	01	059.9911A	59A	1	103	605
	02	059.9911B	59B	1	103	2006
	03	084.9931D	84D	1	104	2004
	합 계			3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타입)	동호	층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시 (2026.06.30.)
59A	103동 605호	5~10	1	112,557,000	305,403,000	417,960,000	41,796,000	376,164,000
59B	103동 2006호	11~20층	1	112,557,000	322,293,000	434,850,000	43,485,000	391,365,000
84D	104동 2004호	11~20층	1	159,467,000	387,263,000	546,730,000	54,673,000	492,057,000

※ 본 주택은 사용승인이 완료된 아파트로서 발코니 비확장 선택은 불가하며, 각 주택형별 발코니확장 비용은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공급함으로 별도의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비에 대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세대별 인지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잔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별도의 대출금융 기관 알선 등을 하지 않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기일 이전 선납을 하는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공급대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납부계좌(계약금, 잔금)	신한은행	100-035-946448	(주)하나자산신탁

※ 공급금액의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일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 결제 불가))

※ 공급금액의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계약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추가 선택품목(PLUS 옵션) 금액 및 납부일정 _ 선택 및 변경 불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타입)	해당 동·호수	추가 선택품목	선택사양	공급금액	합계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시 (2026.06.30.)
59A	103동 605호	바닥재	유럽산 포세리타일 / 거실, 복도, 주방 + 강마루 침실)	1,450,000	6,040,000	604,000	5,436,000
		조명 마감 Style-Up	거실 우물천장, 아트월 · 복도, 거실 · 침실특화 조명	3,470,000			
		주방 조명 Style-Up	주방 조명	1,120,000			
84D	104동 2004호	현관중문	3연동 자동 중문	2,090,000	32,100,000	3,210,000	28,890,000
		불박이창	침실3	1,200,000			
		냉장고장 수납 시스템	냉장고장 수납 하드웨어 시스템	1,420,000			
		슬라이딩 도어	침실4	560,000			
		바닥재	유럽산 포세리타일 / 거실, 복도, 주방 + 강마루 침실)	2,210,000			
		벽 마감 Style-Up	거실 · 복도 · 현관 · 거실창호 주위 벽	2,360,000			
		히든도어	침실4 슬라이딩 도어	4,450,000			
		조명 마감 Style-Up	거실 우물천장, 아트월 · 복도, 거실 · 침실특화 조명	4,040,000			
		주방 조명 Style-Up	주방 루버천장, 특화조명	1,040,000			
		주방 가구 Style-Up	전동플랩상부장, 유럽산하드웨어, 독립형 렌지후드, 주방상판 매입 콘센트, 음성인식주방TV(13"), 하이브리드쿡탑(인던선2구+하이라이트1구)	7,270,000			
		주방 상판 Style-Up	세라믹 주방상판, 다용도실 보조주방 및 세라믹 상판 식탁	5,460,000			

※ 본 주택은 사용승인이 완료된 아파트로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이 이미 시공되어 상기 해당 세대는 추가 선택품목 금액을 반드시 납부해야만 공급계약을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기일 이전 선납을 하는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PLUS 옵션) 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공급대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납부계좌(계약금, 잔금)	하나은행	430-910063-47004	(주)에스알에이엠아이

※ 추가 선택품목 금액의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일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 결제 불가))

※ 추가 선택품목 금액의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금액(계약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추가 선택품목(가전 옵션) 금액 및 납부일정 _ 선택 및 변경 불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타입)	해당 동·호수	추가 선택품목	선택사양	공급금액	합계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시 (2026.06.30.)
59A	103동 605호	시스템에어컨	LG전자 / 2대(거실, 침실1)	3,460,000	3,460,000	340,000	3,120,000
84D	104동 2004호	시스템에어컨	LG전자 / 6대(거실, 주방, 침실1,2,3,4)	8,760,000	19,300,000	1,910,000	17,390,000
		시스클라인(환기형 공기정정시스템)	2대(거실, 침실1)	1,700,000			
		BIS냉장고	LG전자 / 홈바형	5,750,000			
		김치냉장고	LG전자	1,450,000			
		식기세척기	LG전자	1,100,000			
		광파오븐	LG전자	540,000			

※ 본 주택은 사용승인이 완료된 아파트로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이 이미 시공되어 상기 해당 세대는 추가 선택품목 금액을 반드시 납부해야만 공급계약을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기일 이전 선납을 하는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가전 옵션) 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공급대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납부계좌(계약금, 잔금)	신한은행	계약자별 가상계좌 부여	자이에스앤디(주)

※ 추가 선택품목 금액의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일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 결제 불가))

※ 추가 선택품목 금액의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금액(계약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대금납부조건은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시스클라인, 빌트인 가전은 시공 전문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주)에서 계약 체결로 계좌가 상이합니다.

※ 가전옵션은 (주)하나자산신탁과 무관하며 자이에스앤디(주)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3.26.(목) ~ 2026.04.04.(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3.26.(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일정

구분	제출 대상자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내용	무순위(사후) 청약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2026.03.27.(금) ~ 2026.03.28.(토) (10:00 ~ 16:00)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주소 : 경기도 화성특례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서북안길 70, 단지내상가 108호)
유의사항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 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위임인(대리) 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본인	•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개명 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분 추가 제출 필요(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개명 이전 일로 설정)
제3자 대리인신청 추가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분양사무실에 비치(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무주택 소명 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소명자료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04.02.(목) 10:00~16: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자격검증서류	-	-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 통지 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 구분 : 본인 발급,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위임인(대리인 계약 불가)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한 경우 서명으로 대체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분양사무실에 비치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 수입인지 구매처 : [오프라인] 우체국·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		위임장	계약자 (본인)	- 분양사무실에 비치(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		인감증명서(위임용), 인감도장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6.04.03.(금) 10:00**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6.04.03.(금)**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의 범위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참고사항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계약일 내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및 참고사항

- 본 공급시설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에스알에이엠아이(이하 '시행위탁자'라 함),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이하 '수탁자'라 함) 및 시공사 지에스건설(주)(이하 '시공사'라 함) 간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1)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은 분양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인 ㈜에스알에이엠아이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2)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와 시행수탁자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인 ㈜에스알에이엠아이에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인 ㈜에스알에이엠아이에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3)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에스알에이엠아이와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주)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4)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5) 본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6)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 분	사업주체 및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 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에스알에이엠아이	지에스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10111-3399577	110111-0002694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24-21, 6층 604호 (금촌동, 보람프라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청진동)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xi.co.kr/lajeune>)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위치 : 경기도 화성특례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서북안길 70, 단지내상가 108호

■ 분양 문의 : 1833-5820